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17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이양수・박덕흠・배준영

강대식 · 서범수 · 이종배

김소희 · 서천호 · 박성훈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원산지 미표시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 입접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있어, 통신판매

를 중개하는 자로서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아니하도록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제1항·제2항 및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①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
	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
	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태료) <u><신 설></u>	제18조(과태료) ① 제5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
	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5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u>한다.</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②</u>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	<u><삭 제></u>
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	
<u>한 자</u>	
2. ~ 3의2. (생 략)	2. ~ 3의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4. • 5.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 1.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 <u>제2항제2호</u>부터 제5호까지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저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히	H
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일	<u>}</u> -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병	}- }
치한 자	
4.·5. (현행과 같음)	
<u>③</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_
	_
	_
1. <u>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u>	5
	_
	_
	_
2. 제3항제2호	_